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관련 서류 작성 의무 부과 >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16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관련 서류 작성 의무 부과	3

I. 제안경위

2025년 9월 5일 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 이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고 함)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점검해야할 필수서류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서류임.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관리자가 대신 작성, 서명날인하는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됨. 산업재해예방 및 조사, 책임규명에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작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일례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관리감독자 선임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선임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될만큼 안전보건에 관한 경험이 많았음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근거로 사용됨. 그러나 이후 피해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서를 대신 작성하고 피해근로자의 서명인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중요 서류이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선임된 자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만큼,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두어,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관련 서류 직접 작성 의무 부과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지정 및 해당 업무 수행에 부수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서류등의 변조·훼손 금지와 보존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19조의2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정에 관한 서류) ① 제15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지정 및 해당 업무 수행에 부수하는 서류(이하 “서류등”이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등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 8. (생략)	<u>을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u> 제170조(벌칙) ----- ----- -----. 1.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¹⁾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

- 1)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서 사업장 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등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하는 관리감독자,²⁾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³⁾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⁴⁾ 선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과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인적·기능적 관리체제를(안전보건관리체제⁵⁾) 구성하여 구성원 간 관리·감독 체계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지정과 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하도록 하며, 서류의 변조·훼손 금지와 보존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

2)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4)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목이 ‘안전보건관리체제’임

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안 제19조의2제2항의 ‘문서등의 보존’의무의 주체가 내용상 제19조의2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으로 이해되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보존과⁶⁾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치⁷⁾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한 현행법령과 내용상 배치되고, 보편적 의무로 규정한 ‘서류등의 변조·훼손 금지의무’와도 주체가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 제19조의2제2항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및 그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거나 선임 관련 서류를 보존할 의무 등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선임 관련 서류 등의 작성·보존 의무를 별도로 부과할 경우, 동일한 관리 체계에 대해 중복된 의무를 부여하게 되어 의무 주체가 불명확해 질 우려가 있고, 선임의 ‘객체’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자신에 대한 선임 서류를 직접 작성·보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서류의 변조 등에 대해서는 이

6)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미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보다 낮은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45